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7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김용민 · 장경태 · 민형배
박찬대 · 박정현 · 황운하
윤준병 · 박성준 · 부승찬
김승원 · 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전관예우 논란을 반복해 왔음. 또한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특히,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 활동을 하는 사례, 고위직을 지낸 법관·검사가 퇴직 즉시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로펌 고문·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 사건 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면책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 등이 반복되고 있음.

더군다나 사법부와 검찰 조직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이에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특정 고위직 판·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무원 재직 중 위 제5호에서 제7호까지의 징계처분을 제외한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고위공직퇴임변호사 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직에서 퇴임한 자인 경우에는 퇴임 후 3년간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헌법재판소장
4. 헌법재판관
5. 검찰총장(직무대행을 포함한다)

제8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매년 제89조의4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

한 통계발표

제89조의4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관한”을 “관하여 수입액수를 포함한”으로, “제출하여야”를 “신고하고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8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를 “국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건명”을 “수입액수, 사건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의 절차와 벌칙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입한 자

9.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고 거부 및 제출거부, 정해진 기한에 신고 및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17조제4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이”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직퇴임변호사 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 ----- -----. 1. ~ 7. (현행과 같음) 8. <u>공무원 재직 중 위 제5호에 서 제7호까지의 징계처분을 제외한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8. ~ 10. (생 략) <u><신 설></u>	9.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 0호까지와 같음) <u>제8조의2(고위공직퇴임변호사 등 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직에서 퇴 임한 자인 경우에는 퇴임 후 3 년간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u> 1. <u>대법원장</u> 2. <u>대법관</u> 3. <u>헌법재판소장</u> 4. <u>헌법재판관</u> 5. <u>검찰총장(직무대행을 포함한 다)</u>

제89조(윤리협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회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 ④ (생략)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생략)

② 윤리협회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

제89조(윤리협회의 기능 및 권한)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매년 제89조의4에 따라 지방
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
료에 대한 통계발표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

-----3년-----

-----관하여 수임액
수를 포함한-----

-----신고하고 해당자료
를 제출하여야-----.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회의-----

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생략)

<신설>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 7. (생략)

-----.

1. -----

-----수임액수, 사건명-----

2. (현행과 같음)

③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의 절차와 벌칙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2조(벌칙) -----

-----3천만원-----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자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제117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지방검찰청검사장</u>이 부과·징수한다.	9. <u>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고거부 및 제출거부, 정해진 기한에 신고 및 제출하지 아니한 자</u> 제11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법무부장관</u>이 -----.
---	--